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479
----------	-------

발의연월일 : 2025. 12. 22.

발 의 자 : 송옥주 · 홍기원 · 이원택
소병훈 · 위성곤 · 박지원
전종덕 · 박해철 · 이수진
한정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안 여객선 좌초 사고는 좁은 수로 · 잔교 · 암초가 복잡하게 이어지는 도서 · 연안 해역에서 항로 지정과 안전기준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발생했음. 또한 조타실 내 휴대전화 사용 등 항해 집중 저하 행위도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지적되었음.

현행법은 좁은 수로나 위험수역을 체계적으로 지정 · 관리하는 규정이 없고, 운항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규정도 부재하여 기본적인 안전운항 기준이 법률 차원에서 확보되지 못하고 있었음.

이에 좁은 수로등을 정부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지정 · 고시하고,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며, 안전운항과 직접 관련된 직무 수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여 도서 · 연안 해역의 구조적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유사 사고의 재발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7조의2 및 제40조의2 신설 등).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좁은 수로등의 지정 및 재검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수로와 항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좁은 수로나 항로(이하 “좁은 수로등”이라 한다)로 지정하고 그 범위·좌표·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수로나 항로의 수심과 폭
2. 통항 선박의 길이, 흘수, 폭
3. 항해자의 항행관습
4. 해당 수역의 조석의 차, 조류의 속도와 세기 등 해당 수로나 항로의 자연적 조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좁은 수로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40조의2(운항 중 휴대전화 등 사용의 제한) ① 조타기 조작 및 항해당직 등 선박의 안전운항에 직접 관련된 직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직무 수행 중에 휴대전화 또는

그 밖의 휴대용 전자기기(이하 이 조에서 “휴대전화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이 정박 또는 계류 중인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범죄 등의 신고 또는 조난·재난 상태에 있는 인명·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선박의 항법, 통신, 기관운전 등과 관련하여 안전운항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 ② 선장은 제1항에 따른 휴대전화등의 사용 제한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원의 근무배치 및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휴대전화등의 범위,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과 적용 대상 직무, 휴대전화등의 사용이 제한되는 수역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4조제1항 본문 중 “수로나 항로(이하 “좁은 수로등”이라 한다)를”을 “수로등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조의2(좁은 수로등의 지정 및 재검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수로와 항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좁은 수로나 항로(이하 “좁은 수로등”이라 한다)로 지정하고 그 범위·좌표·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u> <u>1. 수로나 항로의 수심과 폭</u> <u>2. 통항 선박의 길이, 흘수, 폭</u> <u>3. 항해자의 항행관습</u> <u>4. 해당 구역의 조석의 차, 조류의 속도와 세기 등 해당 수로나 항로의 자연적 조건</u> <u>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좁은 수로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제40조의2(운항 중 휴대전화 등 사용의 제한) ① 조타기 조작</u>

및 항해당직 등 선박의 안전운
항에 직접 관련된 직무로서 해
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직무 수행
중에 휴대전화 또는 그 밖의
휴대용 전자기기(이하 이 조에
서 “휴대전화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선박이 정박 또는 계류 중인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범죄 등의 신고 또는 조난·
재난 상태에 있는 인명·선박
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
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선박의 항법, 통신, 기관운전
등과 관련하여 안전운항을 위
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경
우

② 선장은 제1항에 따른 휴대
전화등의 사용 제한을 관리·
감독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

제74조(좁은 수로 등) ① 좁은 수로나 항로(이하 “좁은 수로등”이라 한다)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은 항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될 수 있으면 좁은 수로등의 오른쪽 끝 쪽에서 항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역 또는 제75조제1항에 따른 통항분리수역에서는 그 수역에서 정해진 항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 ⑦ (생략)	<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원의 근무배치 및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③ <u>그 밖에 휴대전화등의 범위,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과 적용 대상 직무, 휴대전화등의 사용이 제한되는 수역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u> 제74조(좁은 수로 등) ① -----수로등을----- ----- ----- ----- ----- ----- ----- ----- ----- -----. ② ~ ⑦ (현행과 같음)
--	--